##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에 대한 분석

허 철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체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표현적 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문체론적수단과 수 법의 체계입니다.》

어휘적표현수단은 각이한 기능문체의 언 어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문체는 형상성이나 감정 정서적색갈을 요구하지 않는 자체의 특성으 로 하여 다른 기능문체들 실례로 문학예술 문체나 생활문체들에서처럼 정서적색갈이 짙은 어휘표현수단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문체에 다같이 쓰일수 있는 중 성적인 어휘수단들을 통하여 공식성의 목적 을 달성하는것이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 단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형 상성과 구체성, 생동성과 감정정서적뜻빛갈 을 요구하는 다른 기능문체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그러한 어휘적표현수단을 요구하 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체들에서 전혀 쓰이 지 않거나 적게 쓰이는 어휘적표현수단들을 선택하는것으로 하여 법률문체도 자기 특색 의 어휘적표현수단을 갖추게 되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은 무엇보다 먼저 품사별에 따라 분석하여볼수 있다.

품사는 어휘문법적범주로서 그자체는 아무런 문체론적색갈도 없다. 그리므로 법률 문체에 어울리는 품사란 따로 없으며 다만 사용비률로 볼 때 어떤 품사가 다른 문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쓰이는가 하는 문제만 있을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 양법》에 나오는 단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해 보면 총 1 529개의 품사들중 명사 929개, 60.8%, 수사 77개, 5%, 대명사 32개, 2.1%, 동사 349개, 22.8%, 형용사 71개, 4.6%, 관형사 24개, 1.6%, 부사 47개, 3.1%, 감동사 0개, 0%이다.

품사분류에서 제일 많이 쓰인것은 명사이며 그 수는 60%를 넘는다.

다음 많이 쓰인것은 동사이다. 동사는 22.8%로서 전체 품사의 1/4에 해당된다. 이 것은 결국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기본이고 기타 보어와 체언규정어 그리고 체언술어에 명사가 많이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하다.

한편 동사에 비하여 형용사는 거의 1/6 정도로서 매우 적은 비률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술어나 용언규정어에 들어가는 형용 사는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부사도 아주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천지》에서 품사수가 총 1 540개 되는 본문을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명사 1 087개, 70%, 수사 12개, 0.8%, 대명사 72개, 4.8%, 동 사 276개, 18%, 형용사 42개, 2.7%, 관 형사 9개, 0.8%, 부사 42개, 2.7%, 감동 사 0개, 0%였다.

이 자료와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보면 명사쓰임회수에서 비록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문학예술문체나 법률문체에서 명사가 다른 품사들과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편 동사는 서로 다른 문체들에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는 총체적으로 적게 사용되지만 법률 문체보다 문학예술문체에서 배로 많이 쓰인 다는것을 알수 있다.

형용사는 두 문체에서 거의 같은 분량을 가진다고 볼수 있으나 0.5%정도의 차이는

있다. 물론 하나의 부문법과 어느 한 소설 본문의 품사대비만을 놓고 두 문체에서의 품 사적특성을 론할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비분 석을 통하여 문체들호상간의 뚜렷한 차이를 알수 있다.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은 다음으로 사회정치적어휘수단에 따라 구분하여볼수 있다.

법률문체의 사회정치적어휘수단에는 우 선 사회정치용어가 있다.

사회정치용어는 국가건설과 활동, 사회정 치제도 등 사회정치적내용을 담고있는 어휘 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학술용어 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사회정치용어는 계급적 및 민족적리익을 옹호하며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사회적집단생활과 조직사상생활을 반영하는 어휘일반을 통털어서 이르는 말이다.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 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 로 삼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헌법》 제3조.)

우의 법조항에 쓰인 어휘들은 거의 모두 가 다 사회정치용어들이다. 그러므로 법조 항은 직선적이고 정확하고 명료하며 엄격하 게 정식화되여있다.

사회정치용어는 법률문체의 높은 품위와 무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이처럼 사회정치용어는 법률문체의 공식 성을 특징지어주면서 글의 무게와 품위를 높 이고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중 요한 어휘적수단으로 된다.

법률문체의 사회정치적어휘수단에는 또 한 전문용어가 있다.

전문용어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등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개념을 담거나 특정한 대상을 이름지어 나타내는 어 휘이다. 어휘사용에서 언제나 단일한 뜻만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는 법률문체에서 사회정치용어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면서 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어휘수단으로 된다.

전문용어는 엄밀하게 규정된 하나의 뜻 만을 가지고있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로만 리해할수 있는 담보를 주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이고 정확한것이여서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할것을 요구하는 법 률문체의 요구에도 맞는다.

이와 함께 전문용어는 고유한 조선말로 잘 다듬어져있으므로 일정한 분야에서만 쓰이 는 어휘이지만 기본적인 뜻은 누구나 리해 하게 되여있어 문체의 통속성을 잘 보장하 는 수단으로 된다.

전문용어는 그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법률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된다.

실례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 제법》을 분석하여본데 의하면 여기에 쓰인 단어 총 898개중에서 전문용어가 149개로 서 그것이 차지하는 사용비률은 16.7%에 달한다. 이것은 전문용어가 집약적으로 사용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글이 간 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법률문체의 사회정치적어휘수단에는 또 한 굳어진 표현이 있다.

법률문체에는 개별적인 단어의 한계를 벗어나 단어결합이나 문장의 형태로 굳어진 표현들이 많이 쓰인다.

법률문체에서 굳어진 표현들은 개별적인 단어들이 가지는 제한된 의미의 한계를 벗어 나 필요한 표현적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확 대되여 서술됨으로써 법률문체의 높은 품위, 간결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굳어진 표현은 두개이상의 단어가 문법 적으로 결합하여 견고하게 굳어진 어휘수단 으로서 일정한 시기를 거쳐 뜻과 형태가 어 떤 경우에도 그 결합을 갈라놓을수 없을 정 도로 굳어져 하나의 어휘와 같은 뜻을 나타 낸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구조가 견고하여 언 제나 형태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것만큼 문 장수단이 아니라 어휘수단으로 된다.

실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 의헌법》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굳어진 표현들을 찾아볼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세계정치의 원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이와 같은 표현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정 에서 창조되고 공고화된 어휘수단들로서 법 률문체뿐아니라 공식사무문체의 모든 글에 서 적극적으로 쓰이고있다.

굳어진 표현들에서 중요한것은 구호이다. 실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 의로동법》제3조에 들어있는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들 수 있다.

이 구호는 언어표현의 간결성과 공식성을 잘 보장해주고있다.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은 다음으로 기원의 측면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 어로 갈라볼수 있다.

법률문체의 어휘적표현수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고유어어휘이다.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쉬운 말은 인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고유어어휘이다.

고유어어휘는 다른 민족어의 침습을 받지 않고 해당 민족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 시켜온 어휘수단으로서 민족적특성을 가장 뚜렷이 체현하고있는 어휘수단이다.

고유어어휘는 해당 민족어의 주체성과 민 족성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며 오래동안 고 질화되여오던 낡은 언어잔재를 가시고 진정 으로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법률문체를 건설 할수 있는 기본어휘수단으로 된다.

고유어어휘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문체의 특성에 맞는 어 휘수단이다.

고유어어휘는 법률문체의 통속성을 보장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속성은 어떤 글이나 다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의무적인 집행과 통일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법률문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생활준칙과 행동규범들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식되고 납득될 때 그들이 법규범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법률문체에서는 《양육하다, 유 회시설, 출생하다, 수유시간, 무의무탁자, …》와 같은 한자말대신에 《키우다, 놀이시 설, 태여나다, 젖먹이는 시간, 돌볼 사람이 없 는 사람》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하는것으로 법 문건의 통속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 하고있다.

이밖에도 《별도로 내려보내다, 담당하다, 터전, 부단히 높이다, 월동준비, 전투준비, 통보하다, 부록》이라는 단어보다 《내려보 내다, 맡아하다, 터밭, 끊임없이 높이다, 겨 울나이준비, 싸움준비, 알려주다, 붙임》과 같은 친숙해진 어휘들을 쓰면 법률문건에 담 겨져있는 뜻을 사람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 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문체에 한자말이나 외 래어가 전혀 쓰이지 않는것은 아니다.

실례로 부문법들가운데서 외래어가 가장 많이 쓰인 법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을 들수 있다.

이 법의 어휘를 분석해본 결과 총 813개의 단어중에 외래어는 57개로서 7%, 여기에 《외래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까지 다 포함시켜도 모두 117개로서 14.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순수한 고유어는 257개, 《한자어+고유어》로 된 고유어화된 어휘는 112개, 모두 369개로서 한자어보다 5.2%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이 국가 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법조항과 법규범들도 인민들이 늘 쓰 고 리해하기 쉬운 어휘들로 만들도록 함으 로써 법이 철저히 근로인민의 법으로 되도 록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법률문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실지 법제정과 법집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조문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접근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